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0. 11.

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10월 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 다. 회부일자 : 2007년 10월 5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31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10월 9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고광득)

가. 제정이유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정 등(안 제6조)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 또는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킬 시 최소규격을 정함.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정함.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각종 공사 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함.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 기타, 부칙(안 제22조~제32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종전의 도로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 등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과 같은법 시행령 이 2007년 4월에 시행되어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법적으로 당위성을 확보했으며,
새주소 체계는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하고, 기존 주소와 병행하여 2011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 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도로명의 변경, 안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 안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여 새주소 체계에 대한 변경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안 제9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설치와 안 제24조는 새주소 사업의 중요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음.
- 다만, 2007년 4월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새주소에 대한 주민인식이 상당부분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홍보 및 주민교육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되므로 조례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0
----------	----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안 제3조)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 광고물에 포함 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함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각종 공사 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함

※ 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상·하수도 공사 안내문 등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안 제19조)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사. 기타, 부칙(안 제22조 ~ 제32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 달력, 손수건, 마우스패드, 저금통, 접지형 지도, 부채, 자 등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 2007. 9. 6 ~ 9. 27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⑦ 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 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구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10일전에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 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 부여기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군·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 구성·운영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등포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외부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현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p> <p>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 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면적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합니다.</p> <p>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능 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 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30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